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 614

제안연월일: 2015. 07. 06 제 안 자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○ 2015년 4월 7일 김정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456번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, 같은 해 5월 20일 남재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498번 같은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,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.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현재 비오톱평가 등급별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시민의 오해와 일선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 아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 며.
- 토지의 효율화라는 시대적 변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공업우세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 이적지 등에는 산업고도화 기반 조성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,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

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하여야 함(안 제24조 관련 별표 1 제1호가목).

나.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대한 공동주택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, 현재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의 구간을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, 이에 따른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조정하고,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지원시설은 해당 건축물연면적의 30퍼센트 이하로 함(안제35조 제1호 관련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3호나목)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관련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(4) 괄호 각목외 본문 중 "1등 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"을 "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"으로 한다.

제35조제1호 관련 별표 2의 제2호가목의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다음 과 같이 하며, 같은 별표 2의 제3호나목 중 "지원시설(해당 건축물연면적의 20%이하)에 한한다."를 "지원시설(해당 건축물연면적의 30%이하)에 한한다."로 한다.

사업구역내 공장비율 (2008.1.31 기준)	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	비고		
10~20% 미만	10% 이상			
20~30% 미만	20% 이상	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		
30~40% 미만	30% 이상	만을 대상으로 산정한다.		
40~50% 미만	40% 이상	인물 내용으로 선정인다.		
50% 이상	50% 이상		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혀 햇

1. 분야별 검토사항

검토분야	허 가 기 준					
	(1) ~ (3) (생략)					
	(4) 제4조제4항의 도시생태현황 조					
가. 공통분야	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					
	이고 개별비오톱평가 <u>1등급인</u>					
	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					
	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.					
	(개) ~ (대) (생 략)					

개 정 안

[별표]]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24조 관련) [별표]]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24조 관련)

1. 분야별 검토사항

검토분야	허 가 기 준
	(1) ~ (3) (현행과 같음) (4)
가. 공통분야	<u>1</u> 등급으
	로 지정된 부분은 보전
	(개) ~ (대) (현행과 같음)

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 [별표 2]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(이적지 포함)

- 1. (생 략)
- 2. 산업부지 확보비율
- 가.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1호의 단서에서 정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다음과 같다. 다만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% 미만 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

사업구역내 공장비율 (2008.1.31기준)	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	비고
10~30% 미만	20% 이상	사업구역은 준공업지역
30~50% 미만	30% 이상	만을 대상
50% 이상	40% 이상	으로 산정 한다.

- 나. ~ 다. (생 략)
- 3. 산업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산업시설의 범위 가.(생 략)
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 시설과 제7호 판매시설은 가목 용도의 지원시설(해당 건축물연면적의 20%이 하)에 한한다.

다. (생략)

4. 기타

가. ~ 나. (생 략)

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 에 대한 공동주택 허용기준 (제35조제1호 관련)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-----

7	•	 	 	 		 	 	

사업구역내 공장비율 (2008.1.31 기준)	사업구역 면적대비 산업 부지 확보비율	비고
10~20% 미만	<u>10% 이상</u>	사업구역은
20~30% 미만	20% 이상	준공업지역
30~40% 미만	30% 이상	만을 대상
40~50% 미만	40% 이상	으로 산정
50% 이상	50% 이상	한다.

나. ~ 다. (현행과 같음)

3. ----

가. (현행과 같음)

지원시설(해당 건축물연면적의 30%이 하)에 한한다.

다. (현행과 같음)

4. ----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